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
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성환 (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열에너지는 물의 온도차를 활용하여 냉·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, 히트펌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 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효율을 보임.

이에 EU·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해수 및 하천수 뿐만 아니라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발하게 활용중임

반면, 국내 법제도에서의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어, 유출지하수,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

특히,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인 지열, 공기열, 수열 중 수열에너지는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,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확산이 필요함.

따라서,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기 위해 동 시행령이 규정하는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하도록 함(안 별표 1 개정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(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) “제5호 수열에너지, 나. 범위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”를 추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※ [별표 1]

		현행	개 정 안
5.수열 에너지	가. 기준	물의 열을 히트펌프(heat pump)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	(현행과 같음)
	나. 범위	<u>해수(海水)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</u>	1. <u>해수(海水)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</u> 2. <u>물의 온도차를 이용 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물이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1